
2016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 · 실적 · 사례



2017. 7.

서 울 대 학 교
[상 근 감 사 실]

2016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 및 실적

□ 감사 운영 방향

- 종합감사 이외에도 내부통제 기능이 취약한 기관 및 분야의 회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취약분야·기관 특정감사 실시
- 감사의 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사실 및 취지와 다르게 이행 및 보고되는 건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점검
- 여러 소속기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본부 부서에게 재발방지책 강구 등 개선방안 마련 촉구 등을 통한 제도 개선

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○ 실시 기관

- 종합감사 :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등 4개 기관(2016. 9. 5. ~ 2017. 2. 14.)
- 특정감사(취약분야·기관 확인감사) : 언어교육원 등 40개 기관(2016. 11. 7. ~ 2017. 1. 26.)

○ 감사결과 조치사항

- 시정 : 재정 9건(149,869천 원 회수)
- 경고·주의 : 1건 1명
- 경고·주의(기관) : 5건 8개 기관
- 통보 : 17건

□ 감사 결과 주요 성과

○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부적정한 회계 관행 근절

- 법인 재산 무단 임대 근절 및 임대료 손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
- 근거없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엄중한 처분 조치
- 세입세출외현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 및 연체료 등에 대해 공금을 사용하여 임의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
- 관련회계에 세입하지 않은 수입금, 계좌 해지 잔액에 대하여 시정 조치
- 법인카드로 택시비 및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엄중 조치

○ 자체감사 처분 실효성 제고

- 자체감사 처분 조치결과를 사실 및 취지와 다르게 조치한 후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
- 자체감사 처분사항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미 회수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 확보 및 보전 방안 강구 촉구

○ 유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

- 법인재산의 임대 절차 등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촉구
- 단기적이고 비정기적인 사업 등의 수입·지출이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촉구
- 지급근거 없는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수당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 촉구
- 교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안내, 교육, 점검, 규정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촉구

○ 관리 감독 및 구성원 교육 강화 촉구

-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교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,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
-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강화하는 방안 강구 촉구
- 규정에 근거하여 조직, 물품,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 및 교육 강화 촉구

□ 감사 시스템 개선

○ 감사인 감사역량 강화

- 감사원 감사교육원, 감사협회 공공부문 내부감사 전문 기본과정, 법제처 법제기본과정 등 감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이수

○ 외부 전문 인력 활용

- 감사 전문위원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비 등 취약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사항을 개발하여 감사의 전문성 제고

○ 자체감사 처분 요구사항 관련 이행 절차 재정립

-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권자가 하도록 조치

○ 감사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및 사례·판례 종합분석

- 연구비 감사운영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비 비리 및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학 연구비 감사체계를 정립
- 연구비 분야 감사사례 및 판례 종합분석을 통하여 연구비 분야의 감사 결과와 법원의 소송 판례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분석, 정리하여 유사 문제의 재발 방지 효과를 도모하고 규범적 판단 기준을 제시

2016년 하반기 자체감사 주요 감사사례

□ 소관 공간 무단 임대 및 임대료 납부 부적정

- 기관장은 외부업체에 소관 공간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총장의 임대승인을 받아야하고,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쳐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규정, 재산관리규칙】

- 소관공간을 외부업체에 총장의 승인없이 소속기관장 명의로 임의 임대
-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위기관에서 임의로 소관공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체결
- 시설사용료를 법인회계에 납부하지 않고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 등으로 직접 사용

□ 수입금 관리 등 회계처리 부적정

- 수입은 법령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야하며, 각 기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음
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】

- 총 공사금액이 4,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 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, 계약담당자는 거래업체가 준공신고 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공사계약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】

- 교육 과정, 위탁 연수, 학술회의 개최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 중 일부를 법인 회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강연료, 여비, 행사비 등으로 직접 집행
- 공사 준공 시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정 산업무를 소홀히하여 예산에 손해를 끼침

□ 수당 지급 부적정

- 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, 법인 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를 두어 지급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수당,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, 보직수행경비는 서울대학교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
【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,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등】

- 관리업무 등 교직원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단위기관에서 근거 규정 없이 자체 적으로 수당을 결정하여 교직원에게 지급
- 자체적으로 징수한 시설사용료 재원 및 발전기금회계에서 교원에게 명절 및 하계휴가비,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당 지급
- 교직원에게 규정 상 지급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는 보직수행경비를 지급

□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

- 국민권위위원회가 선정한 제한업종(골프장)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, 법인카드를 법정공휴일 및 토·일요일,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】

- 공개강좌 합숙훈련을 골프장에서 진행하면서 골프장 입장료, 카트료 등을 법인 카드로 사용하고 팀프로젝트 활동비로 품의하여 지출
-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이용했음에도 근무지 내 출장에 따른 여비를 신청하여 중복 지급받거나 출장내역이나 증빙자료 없이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
- 관할지 외 교직원 본인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서 국·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인과 업무 명목으로 식대를 법인카드로 사용

□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

-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

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】

- 세입세출외현금은 정해진 세부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,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타 회계로 편입하지 못하는 모든 비공식계좌의 잔액을 법인회계에 편입하되, 계좌의 유형과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회계 세입,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 등으로 처리해야 함
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비공식계좌 정리지침】

- 개인 과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, 4대보험료, 법인카드 대금에 대한 미납 연체금, 가산세가 발생하였음에도 담당자가 변상하지 않고 공금으로 충당
- 보증금 예치 목적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 계좌로 이체하여 목적 외로 사용 후 해당 사업비가 들어오면 보증금 계좌로 상환
-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을 법인회계로 세입하지 않고 기관이 보유한 다른 계좌로 이체

□ 설치근거 없는 조직 운영 및 규정 미 준수

- 연구원 내부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‘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’의 평가와 ‘연구소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친 후, 연구처의 검토, 연구위원회, 기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함

【연구소(원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, 연구소(원) 설치,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】

- 규정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예산 지원
- 소속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임교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장이 임의로 임명